

□ 정부시책 □

## 산자부, 수출·입 관련 규제 완화

중고품 수입승인제가 폐지되고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내달중 16개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국내 기자재반출 확인제도 폐지 등 수출입관련 경쟁제한 규제가 대부분 풀리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소관규제 667개중 51.7%인 345개를 폐지하고 26.1%인 174개를 개선하는 등 총 77.8%인 519개를 연내에 정비키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부문의 경우 중고품 수입승인제가 폐지되고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내달중 16개로 줄며 국내 기자재반출 확인제도 폐지 등 수출입 관련 경쟁제한 규제도 대부분 풀리게 된다.

또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군납에 관한 법률' 등 실효성이 없는 법률을 폐지키로 하는 등 무역관련 54개 규제중 33개를 폐지하고 13개를 개선, 총 46개를 금년내에 정비키로 했다.

산업·기술부문의 경우 업종합리화제도, 비업무용토지의 강제매각 제도,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시설영업기준, 1종 전기용품제조업 등록제, 공산품 품질표시제도, 승강기 형식승인제 등을 폐지하고 공장설립승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규제 217개중 150개를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광업권 투자제한, 가스용품·용기 등의 수입신고제, 특정전기사업자제도 도입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 323개를 연말까지 정비, 에너지 및 자원 산업에도 외국인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규제정비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되도록 개별법 개정보다는 특별법을 제정, 일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가칭 '산업자원부 소관규제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 산업자원부 '98년 규제정비계획

(%)

구분	무역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계
규제 수	54 (8.1)	217 (32.5)	396 (59.4)	667 (100)
폐지	33 (61.1)	114 (52.5)	198 (50.0)	345 (51.7)
개선	13 (24.1)	36 (16.6)	125 (31.6)	174 (26.1)
계	46 (85.2)	150 (69.1)	323 (81.6)	519 (77.8)

이 법률안에는 대외무역법 등 22개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다음은 무역·산업·기술분야의 주요 규제 포함하게 되며 연내에 법 제정을 완료키로 정비내용은 다음과 같다.  
했다.

## 산업자원부 '98년 규제정비계획 주요내용

### ■ 무역분야

-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축소('98. 12 16개로 축소, '99. 6 완전폐지)
- 중고품 수입승인제 폐지
- 국외 오퍼발행확인제 폐지
- 산업설비 수출시 국산기자재 반출확인제 폐지
- 수출입조합의 설립인가 폐지
-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시 승인제 폐지
- 무역자동화사업 지정자의 사업계획 승인제 폐지
- 수출검사 합격표시제도 폐지(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폐지)
- 주한미군 군납업자 등록제도 폐지(군납에 관한 법률 폐지)

### ■ 산업·기술분야

- 합리화업종 지정제도 폐지
- 기준초과 공장용지의 강제매각제도 폐지
- 공장설립승인절차 간소화(의제처리확대

: 50여개 → 150여개, 일부 제출서류의 승인후 청구)

- 과밀지역에서의 공장이전 신고 폐지
-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취득시 관리기관에 신고 폐지
- 과밀억제지역에서의 공장이전명령제도 폐지
- 환경설비품질인증제도 개선(민간기관·공공기관에 이양)
- 대규모점포의 증설등록제, 영업개시 신고 폐지
- 물류공동화 사업 지정제도 폐지
- 다단계판매 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의무 폐지
- 단체표준의 제·개정 신고 폐지
- 계량기정기검사기간 연장(1년→2년)
- 계량기의 형식승인, 자체검사, 교정검사 폐지
- 계량기제작업의 계열화, 전문화명령제도 폐지
- 공산품의 품질표시제도 폐지

- 1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제도 및 2종 전기용품의 신고제 폐지
-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제도를 민간인증제도로 전환
- 전기용품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폐지
- 승강기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폐지
-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 폐지
- 항공기관련사업의 신고 및 휴·폐지 신고 폐지
- 기계염제조업 허가제 폐지
- 염생산의 신고 폐지

■ 에너지·자원분야

□ 자원개발관련

- 외국인에 대한 광업권자의 자격제한 폐지
- 석유등 특수광물의 허가제한 폐지
- 탄좌회사 설립관련제도 폐지
- 연탄사업자의 명의표시 의무 폐지
- 석탄 등의 가격부과금 징수제도 폐지
- 해외개발자원의 반입권고 및 구매권고 폐지
- 해저조광권 양도승인 폐지
- 해저조광구 증감 허가 폐지

□ 에너지관리관련

- 에너지사용계획 신고 폐지
-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신고 폐지
- 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제도 폐지
-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기준 준수, 설치·시공확인제도 폐지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 지정제도 폐지
- 에너지관리진단 전문기관 지정제도 폐지
- 에너지관리진단명령 폐지
- 집단에너지사업 열공급 인가제를 가격상한제로 개선
- 집단에너지 사업시행자 지정제도 폐지

□ 전력관련

- 특정전기사업자제도 도입
- 전기직공급범위 확대
- 전기공급규정 인가제를 약관제로 전환
- 전기설비설치허가 폐지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체 대표자의 자격제한 폐지
- 전기공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개선
- 전기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제한제도 폐지
-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원가입강제 폐지
- 전력기술인 교육훈련 폐지
- 전력시설물 설계사의 설계범위 확대

## 중기청, 구조개선자금 회수제한 철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가운데 운전자금 수혜에 대한 회수(回數)제한이 철폐된다. 또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조업 전 업종 산정방법이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구조개선사업 지원제도 일부를 개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가운데 운전자금은 종전에는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회수제한이 폐지돼 업체당 지원 한도내에서는 연중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뀐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 등 한 번 지원받은 업체가 예기치 못한 경영난에 처한 경우 운전

자금 지원한도가 남아 있어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됐다.

이와 함께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투자지분 50% 이상)의 제조업전업종 산정 방식은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액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계산토록 바뀌어 해외진출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중기청은 구조개선사업 유형 가운데 제조업기반구축사업은 제조업전업종 50% 이상인 기업에 한해 지원해 왔는데 중소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 현지법인의 생산분을 제조행위가 아닌 도소매(무역)로 간주, 일부 기업이 제조업전업종 미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 관세청, 분할선적 回數 제한 폐지

내달부터 분할선적에 대한 회수제한이 철폐돼 필요하면 얼마든지 분할선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사유조항이 폐지돼 신용장 취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취하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현재 선적의무기간 내에서 4회까지로 돼 있는 분할선적 회수제한 조항이 삭제돼 무역업체가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분할선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장 또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 △재해 등의 사유로 수출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만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조항이 삭제되고 수출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관세사인의 세관등록의무와 P/L(페이퍼리스)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관세사인 날인의무도 폐지되고 관세사 또는 화주가 필요할 경우 세관기재란에 신고필증 교부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신고 취하가 사실상 자유화됨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부정환급이 이뤄질 것에 대비, 수출신고취하 승인을 하기 전에 관세환급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이미 환급이 이뤄진 경우 이를 추징하도록 했다.

## 관세청, 재수출조건 관세면세 범위 확대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용 전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시험용 물품’에도 관세가 면세된다.

관세청은 재수출조건 면세대상물품 가운데 시험용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시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되는 시험용 물품은 ‘당해물품의 수입당시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면세 혜택이 주어져 왔다.

예를 들어 고가의 반도체, LCD 생산장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수입하면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사전 검증을 위해 정식 수입전에 무상으로 시제품 장비를 수입해 수개월간 사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성능시험에 사용된 장비는 외국으로 재수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관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11월 10일 신고분 부터는 시제품 장비를 수입해 판매용이 아닌 성능시험 목적의 제품을 생산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세를 받을 수 있다.